



여성가족부



한국건강가정진흥원
양육비이행관리원

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!

월 20만원, 최장 12개월 동안

*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
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

지원대상

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
비양육부·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
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

-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
- 2 개인회생 중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
- 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
- 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
- 5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
- 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

지원요건
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·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
- 신청인(채권자)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
-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

-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

*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,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

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
- 지원기간 : 9개월
(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)

신청방법

- 온라인 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
(www.childsupport.or.kr)
- 오프라인 :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
(04554)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

문의

양육비이행관리원
1644-6621

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~!

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



1.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?

☐

* 미성년 자녀 : 2023년 기준, 2004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

2.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,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?

☐

* 집행권원 :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(판결문, 부담조서 등)
예)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

3. 양육비이행관리원에 “양육비 이행확보 지원” 신청을 하셨나요?

☐

*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: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·추심 등 지원 ☎ 1644-6621

4.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생계급여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?

☐

* 이미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

5.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?

☐

가구원 수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기준중위소득 75% (2023년 기준)	2,592,116원	3,326,112원	4,050,723원	4,748,016원

6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?

☐

- ①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(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, 교육지원,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)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,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,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
-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(외)조부모인 경우
- ④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
-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
- ⑥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위 1. ~ 6. 기준에 “모두” 충족 시,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

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)
- 집행권원 (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) 1통
-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(없을 경우, 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/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/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)
-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위 지원요건 6.의 ①~⑥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



지원절차

01 신청/접수

- 상담
- 신청서 접수

02 서류·요건 확인

- 제출서류 검토
- 요건 적합여부 확인

03 심사 및 지급

-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지급/부지급 통보
- 긴급지원금 지급

04 구상권 행사

-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



한국건강가정진흥원
양육비이행관리원